

'04. 12. 20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

—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20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출 및 회부일자
 -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7일
 -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3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 - 2004. 12. 15 :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- 제안 이유
 -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적용·시행으로 2004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
 -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요인의 상실과 고등학생·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자 수를 확대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신입생·재학생 삭제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)

- 금번 충청북도 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청풍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있어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정하면서 장학금 지급액 현실화 및 지급대상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- 청풍장학기금은 지역 우수인재 발굴·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우리도와 농협이 각각 1억씩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출연해 오고 있으며, 2004. 11월 현재 출연된 장학기금은 총 20여억원으로 우리 도 7억원, 농협 8억원, 그리고 독지가 출연금 5억원으로 구성돼 있음.
- 또한 장학금은 기금 발생수입이자 등으로 중·고등학생, 대학생 100여명 정도를 선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지급해 오고 있음.

※ 2004년도 지급현황(총 80,000천원)

- 내 학 생 : 1,500,000원 × 30명 = 45,000천원
- 고등학생 : 600,000원 × 35명 = 21,000천원
- 중 학 생 : 400,000원 × 35명 = 14,000천원

※ 연도별 지급내역(총 478명, 332백만원)

- 1998년 : 38명(대학생 14, 고등학생 14, 중학생 10), 24백만원
- 1999년 : 38명(대학생 14, 고등학생 14, 중학생 10), 24백만원
- 2000년 : 38명(대학생 14, 고등학생 14, 중학생 10), 24백만원
- 2001년 : 82명(대학생 28, 고등학생 29, 중학생 25), 50백만원
- 2002년 : 82명(대학생 28, 고등학생 29, 중학생 25), 50백만원
- 2003년 : 100명(대학생 30, 고등학생 35, 중학생 35), 80백만원
- 2004년 : 100명(대학생 30, 고등학생 35, 중학생 35), 80백만원

□ 그러나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과 같이 학교 운영지원비나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비 성격보다는 우수인재에 대한 발굴과 육성 차원에서의 지급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음.

□ 따라서 중학생은 의무교육확대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만 수혜폭을 넓히는 것은 해당 중학생의 사기저하는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※ 단, 유능한 인재양성의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2005년 상반기까지 조례전면개정 조건으로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6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 규정의 적용·시행으로 2004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
-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요인의 상실과 고등학생·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자 수를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학교 신입생·재학생 삭제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”를 “고등학교 및 대학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조표

현	행 개 정 안
제7조(장학금 지급대상) 장학금 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 의 자녀로서 <u>중·고등학교</u> <u>및 대학교</u> 에 재학중인 학생 (신입생 포함)으로 한다.	제7조(장학금 지급대상) <u>고등학교</u> <u>및 대학교</u>:

관계법령 발취

□ 교육 기본법

제8조 (의무교육)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 다만,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.

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제23조 (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) ①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행정구역상 읍·면지역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2. 별표 1의 도서·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4.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·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
5.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

②삭제<2001.10.20>

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

제2조 (특별시·광역시·시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확대에 따른 적용례 등) ① 제23조제1항제4호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.

②제2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자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교육대상자로 본다.